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9조 ① 본규약의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가 있다. 사무총장은 그것을 받아서 본규약의 당사국에 모든 개정안을 통보하고, 당사국으로서 이것을 심의하거나, 또는 이에 대하여 투표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회의를 개최함에 찬성하는가를 사무총장에 통고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의 적어도 3분의 1이 이 회의에 찬성할 때는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최로써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다.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구할 수가 있다.

②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본규약의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해, 그러한 국가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수락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개정이 효력이 생긴 때는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당사국은 계속하여 본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하여 구속되어야 한다.

제30조 제26조의 제⑤항에 의하여 행해진 통지 외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의 제①항에 개기한 모든 국가에 다음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과 가입.

⑤ 제27조에 의한 본규약의 효력발생일과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효력발생일.

제31조 ① 본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와 스페인어에 의한 본문을 동일하게 정문으로 하여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②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규약의 인증답본을 제26조에 기재한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II.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

● 전문 ●

본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세계에서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인 것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가 인간고유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것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서, 시민적·정치적 자유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창조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국제연합헌장이 각국에 과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할 의무를 고려하며,

개인이 타인과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서, 본 규약에 인정된 권리의 촉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갖는 것을 이해하여,

다음의 제규정을 협정한다.

제 1 부

제1조 ①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권리에 의하여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며,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②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과 국제법에 기하여 국제적인 경제협력에서 발생한 의무를 해하지 않는 한,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은 자기들의 생존의 수단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③ 비자치지역과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본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서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는 한편 본권리를 존중하여야만 한다.

제 2 부

제2조 ① 본규약의 각 당사국은 그 영역내에 있어서 그 관할권에 복종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 의견, 국민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본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② 본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현행입법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규약에 인정된 권리의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그 헌법상의 절차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③ 본규약에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④ 본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구제가 부여되는 것을 확보할 것.

⑤ 전기의 구제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행정 혹은 입법기관 또는 당해국의 법률제도에서 정한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을 확보하고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⑥ 전기의 구제가 용인된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실현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본규약의 당사국은 본규약에 제기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수함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다.

제4조 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그 사태의 존재가 정식으로 선언된 때에는 본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정세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밀하게 필요로 하는 한도까지, 본규약에 의해 부담하는 의무에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다만 이 조치는 당해국이 국제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다른 의무와 모순되지 않고 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① 항과 ② 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와 제18조에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위반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본규약의 당사국은 그 위반한 규정과 위반하기에 따른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본규약의 다른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동일한 경로에 의해 위반을 종료할 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조 (전조약의 제5조와 같다)

제 3 부

제6조 ① 모든 사람은 생존할 고유의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누구도 임의로 자기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②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 국가에 있어서는, 사형은 범죄가 행해진 때에 현실로 시행되고 있으며, 본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과할 수가 있다. 이 형벌은 권한있는 재판소에서 언도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③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지는 의무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면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④ 사형을 언도받은 모든 자는 특사 또는 감형을 구할 권리 를 갖는다. 사형에 대한 대사, 특사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⑤ 사형은 18세 미만자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으며, 또 임신 중의 부인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는다.

⑥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체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지 않는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학한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취급 혹은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특히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유로 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인 실험을 받을 수는 없다.

제8조 ①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질 수는 없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② 어느 누구도 고역에 복역할 수는 없다.

③ ④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행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⑤ ⑥ ⑦ ⑧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 형을 과할 수가 있는 나라에 있어서 권한있는 재판소에 의 한 이러한 형벌의 언도에 따른 중노동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⑨ 본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⑩ ⑪ ⑫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판소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구금에서 조건부로 석방되어 있는 자에 통상 요구되는 작업 또는 역무.

⑬ 군사적 성질의 역무와 양심적 병역기피가 인정된 나라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된 국민적 역무.

⑭ 공동사회 생존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나 재해의 경우에 요구되는 역무.

⑮ 통상 시민으로서의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률에서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② 체포된 자는 체포시에 그 이유를 알아야 하며 신속하게 용의사항을 알 수 있어야만 한다.

③ 범죄의 용의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신속하게 재판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관헌의 면전에 연행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 상당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든가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갖는다. 미결 중의 자는 구금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석방은 사법절차의 다른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가 있다.

④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재판소가 지체없이 그 자의 구금이 적법한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구금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석방을 명령할 수가 있게끔 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절차를 밟을 권리다.

⑤ 위법한 체포 또는 구금을 받은 자는 보상을 받을 실효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을 존중하여 취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 ③ ④ 피고인은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서 격리되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야만 된다.

⑤ 미성년의 피고인은 성인에게서 격리되어 가능한 한 속히

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안된다.

③ 감옥제도는 수인의 생생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인의 처우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성년범죄자는 성인에게서 격리되어 그 연령과 법률상의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부여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는다.

제12조 ① 합법적으로 1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토내에서 자유로이 이전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 기타 어떤 나라에서도 퇴거할 자유를 갖는다.

③ 전기의 권리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건강 혹은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본규약에 인정된 다른 권리와 양립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④ 어느 누구도 임의로 자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3조 합법적으로 본규약의 당사국의 영토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서 내려진 결정에 의해서만 그 영토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별 단의 취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출하여 권한있는 기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특히 지명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에 의하여 자기사건의 심사를 수리하거나,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전기의 기관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재판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

대한 범죄사실의 결정 또는 소송사건에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공평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하여, 또는 당사자의 사적 생활의 옹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판소는 엄밀하게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도 까지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보도관계자와 공중은 배제 할 수가 있다. 다만 형사사건 또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언도된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별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에 관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을 요한다.

② 범죄의 책임을 추급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서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모든 사람은 자기에 대한 범죄사실의 결정에 있어서 완전히 평등하게 적어도 다음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자기가 추급받고 있는 범죄책임의 성질과 원인에 관하여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지를 받을 것.

⑤ 자기의 방어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부여받으며 자기가 선택한 변호인과 연락할 것.

⑥ 부당하게 치체되지 않은 재판을 받을 것.

⑦ 자기가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며 자기 또는 자기가 선택한 변호인을 통하여 자기를 방어할 것.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것. 또 사법의 관점에서 보아 필요있는 모든 경우에 충분한 지급수단을 갖지 못한 때는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할당을 받을 것.

⑧ 상대방의 증인을 심문하고 심문하도록 할 것과 상대방의 증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기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인정할 것.

⑨ 재판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

- 우에 무료로 통역의 원조를 받을 것.
- ⑧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제받지 않을 것.
- ④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절차는 그러한 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망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⑤ 유죄로 결정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서 장급재판소에 의하여 그 유죄의 결정과 형벌을 재심사할 권리를 갖는다.
- ⑥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결정된 경우에,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심이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이유로써 그 유죄의 결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그 자가 사면된 때는 유죄결정의 결과 형에 복역한 자는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명확하게 되지 못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자의 책임인 것이 증명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⑦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과 형사절차에 따라서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은 범죄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될 수는 없다.

- 제15조 ①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유죄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범죄가 행해진 때에 적용되던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과할 수는 없다. 범죄가 행해진 후에 보다 경한 형벌을 과하는 규정이 법률에 의해 설정된 때는 범죄자는 그 이익을 받아야 한다.
- ②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실행시에 범죄로 되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떠한 장소에 있어서도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될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사사, 가족,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임의로 또는 불법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명예와 신용을 불법으로 공격받지는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갖는다.

제18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 혹은 신앙을 보지하고 채용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 공개로든 사적이든, 예배, 의식, 행사와 포교에 의하여 자기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②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택한 종교나 신앙을 보지하거나 채용할 자유를 침해할 우려있는 강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명할 자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공공의 안전, 질서, 건강 혹은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만을 과할 수가 있다.

④ 본규약의 당사국은 양친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후견인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아동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는 국경을 넘는 여부에 관계없이 구두, 서면이나 인쇄물, 예술품의 형식 또는 자기가 선택한 기타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수리하고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

③ 전항에 규정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

- ⓐ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

제20조 ①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언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야 한다.

②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을 구성하는 국민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어떠한 창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는 법률에 따라서 과하여진 제한에서 민주사회에서 국가의 안전이나 공안,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제22조 ① 모든 사람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가 포함된다.

② 이 권리의 행사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한으로서 민주사회에서 국가의 안전이나 공안,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가 없다. 본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에 의한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을 과할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조약의 당사국이 동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고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이것을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①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기초적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혼인연령에 달한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어떠한 혼인도 혼인의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없이 성립할 수는 없다.

④ 본규약의 당사국은 혼인의 기간 중 및 그 해소시에 있어서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소의 경우에는 아동에 필요한 보호를 위하여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제24조 ①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국민적·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한 차별없이 미성년자로서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가정·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갖는다.

②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며 이름을 가져야 한다.

③ 모든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갖는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언급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또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않고 다음 사항을 행할 권리와 기회를 부여받지 않으면 안된다.

④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공무의 운영에 참여할 것.

⑤ 평등·보통선거와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해지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보장한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선출될 것.

⑥ 일반적인 평등의 조건 하에 자국에서 공무에 취임할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갖는다. 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 의견, 국민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자에게 보장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7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자는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같이 자기의 문화를 향수하고 자기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기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부

제28조 ① 인권위원회(이하 본규약에서는 「위원회」라 칭한다)를 여기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서 구성하여야 하고 이하에 규정하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규약의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인격이 고결하고 인권의 분야에서 인정된 능력을 갖는 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참가가 유익하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의 자격에서 선출되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는 자로서 본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② 본규약의 각 당사국은 2명 이하의 자를 지명한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만 한다.

③ 동일인은 재지명될 수 있다.

제30조 ① 제1회의 선거는 본규약의 효력발생일 후 6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4조에 의하여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인 경우를 제외하는 위원의 선거일의 늦어도 4개월 전에 본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위원의 지명을 통

보하고 초청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모든 자의 알파벳 순의 명부에 이러한 자를 지명한 당사국명을 포함한 것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이 명부를 본규약의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국제연합본부에 소집된 본규약의 당사국의 회합에서 행해진다. 이 회합은 규약의 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며,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대표자의 투표의 최대다수이고 절대다수를 얻은 피지명자를 위원회의 피선출자로 한다.

제31조 ① 위원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1명 이상 포함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이 지리적으로 형평하게 배분되며 또 다른 문명형태와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어야 한다는 고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제32조 ① 위원회의 위원은 4년의 임기로써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제1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의 마지막 날에 종료한다. 제1회의 선거 후 즉시 이러한 9명의 위원의 성명은 제30조 제④항에 규정한 회합의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의 경우의 선거는 본규약의 제4부의 전제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위원의 1인이 일시적인 성질의 결석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다른 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은 그 좌석이 결원된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1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곧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사망

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부터 그 좌석이 결원된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원이 선언된 경우에, 교대된 위원의 임기가 결원의 선언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만료하지 않은 때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규약의 각 당사국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각 당사국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을 행할 수 있다.

②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자의 알파벳 순의 명부를 작성하여 이것을 본규약의 각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결원을 보충을 위한 선거는 본규약의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에 따라서 선언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출된 위원회의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결원된 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5조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한 조건에 기하여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규약에서 정한 위원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제1회 회합을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회 회합 후에는 그 절차규칙에서 정한 시기에 회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의 국제연합사무국에서 회합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위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임무를 공평하게, 양심에 따라서 수행할 것이라는 염숙한 선언을 공개의 위원

회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39조 ① 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서 그 역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역원은 재선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12인의 위원을 정족수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40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본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이러한 권리의 향유에서 만들어진 진보에 관한 보고를 다음의 경우에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④ 본규약이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면서부터 1년 이내에,

⑤ 그후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②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러한 보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고는 본규약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혹시 있다면 그와 같은 장해를 지적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보고의 부분의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규약의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보고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 이 의견을 본규약의 당사국에서 수취한 보고의 사본과 같은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송부할 수 있다.

⑤ 본규약의 당사국은 본조의 제④항에 따라서 표명된 의견에 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

제41조 ① 본규약의 당사국은 당사국의 1국이 본규약상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당사국의 통고를 수리하고 심리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할 것을 본조에 의하여 어느 때라도 선언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한 통보는 자국에 관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하는 선언을 행한 당사국이 제출한 것인 경우에만 수리하고 심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행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통보를 수리하지는 않는다. 본 조에 의하여 수리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만 한다.

ⓐ 본규약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본규약의 규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문서에 의한 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를 수리한 국가는 통보를 수리한 후 3개월 이내에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의 성명서를 통보를 보낸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가능하고 적당한 범위에서 문제에 대하여 이미 취하여졌든가, 현재 취해지고 있 는가, 또는 취해질 것으로 보이는 국내적 절차와 구제수단을 포함하여야만 한다.

ⓑ 통보를 수리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문제가 관계양당사국이 만족하도록 조정되지 못할 때는 어떠한 국가도 위원회와 상대국에 통고하여 이 문제를 위원회에 부탁할 권리를 갖는다.

ⓒ 위원회는 국제법이 일반적으로 승인한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수단이 원 용되고 다 써본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부탁을 수리한 문제를 취급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 당하게 지연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위원회는 본조에 의한 통보를 심의할 때에는 회합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 ⓕ의 규정을 유보하여 위원회는 이 규약에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대해 중개를 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부탁을 받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에 계기

된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모든 관계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다.

ⓖ ⓘ에 계기된 관계당사국은 문제를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표자를 출석시켜, 구두 또는 문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 위원회는 Ⓛ의 통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보고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의 간단한 기술에 제한하여야 한다.

ⓙ ⓘ의 규정에 의한 해결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보고를 사실이 간단한 기술에 제한하여야 하고 당사국의 문서에 의한 의견과 구두에 의한 의견의 기록을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보고는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당사국에 송부되어야만 한다.

② 본조의 규정은 본규약의 10개 당사국이 본조의 제①항에 의한 선언을 행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본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종속된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당사국에 의한 새로운 통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선언철회의 통고를 수리한 후는 당해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행하지 않고서는 수리되지 않는다.

제42조 ①ⓐ 제41조에 따라서 위원회에 부탁된 문제가 관계당사국이 만족할 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때는 위원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조정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칭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본규약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대하여 조정을 행하여야 한다.

- ⑥ 특별위원회는 당사국이 동의하는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를 얻을 수 없었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결로써 선출되어야 한다.
-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 위원은 본규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하지 않은 체약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 ⑧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 ⑨ 특별위원회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의 국제연합사무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단, 이 회합은 특별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과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 ⑩ 제36조에 따라서 제공된 사무국은 본조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위원회를 위하여서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⑪ 위원회가 입수하여 정리하는 정보는 특별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 다른 모든 관계정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⑫ 특별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심의한 때에는 다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문제를 수리한 후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 보고를 관계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⑬ 특별위원회는 12개월 이내에 문제의 심의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고는 문제심의의 현상의 간단한 설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⑭ 본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는 이 보고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의 간단한 설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⑮ ⑯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보고는 관계당사국간에 논쟁이 일고 있는 모든 사

실문제의 인정과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보고는 또 관계당사국의 문서에 의한 의견과 구두에 의한 의견의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⑰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⑯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관계당사국은 보고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보고내용을 수락하는가 않는가를 통고한다.

⑱ 본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하여 인권위원회가 부담하는 책임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

⑲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비전액을 평등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⑳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⑲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당사국이 분담액을 납입하기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권한을 갖는다.

제43조 인권위원회와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계체향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국제연합을 위한 임무에 관한 전문가의 편의, 특권과 면제를 향수할 권리와 갖는다.

제44조 본규약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국제연합과 전문기관의 조직문서와 조약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것에 기하여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 규정은 본규약의 당사국이 당해당사국에 효력을 가진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할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45조 인권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부

제 46 조

제 47 조

제 6 부

제 48 조

제 49 조

제 50 조

제 51 조

제52조 제48조의 제⑤항에 의하여 행해진 통지와 관계 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의 제①항에 게기된 모든 국가에 다음의 명세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 ⑧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과 가입
- ⑨ 제49조에 의한 본규약의 효력발생일과 제51조에 의한 개정의 효력발생일

제53조 ① 본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와 스페인어에 의한 본문을 동일하게 정문으로 하여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 ②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규약의 인증답본을 제48조에 게기된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I 규약 제24조 ~ 제29조와 동일

III.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체택 193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

본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고, 이 규정을 더 잘 실시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가 이 의정서에 정한 것에 따라, 본규약에 정한 권리침해의 희생자인 것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수리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본의정서의 당사국으로 된 국가는 그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의 규약에 정한 어떠한 권리가 상기의 당사국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통보를 위원회가 수리하고 심의할 권한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당사국이지만, 본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수리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의 규정을 유보하여 규약에 열거한 권리의 어떤 것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모든 국내적 구제수단을 거친 것은 문서에 의한 통보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는 본의정서에 의한 통보로서 익명의 것, 또는 통보제출권의 남용으로 혹은 규약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수리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규정을 유보하여, 위원회는 본의정서에 따라서

제출된 모든 통보에 관하여, 규약의 어떠한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에 따라 본의정서의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② 전기의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문제를 명확하게 하거나,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국에 의하여 취해진 구제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설명서 또는 성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위원회는 개인과 관계당사국에서 입수한 문서에 의한 모든 정보와 대조하여 본의정서에 의하여 수리된 통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③ 동문제가 다른 국제심사 또는 해결의 절차 하에서 심의되고 있지 않을 것.

④ 당해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수단을 거칠 것. 이 규칙은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본의정서에 의한 통보를 심의할 때에는 회합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관계당사국과 개인에 고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차보고 중에 본의정서에 의한 활동의 개요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 이 달성될 때까지에 본의정서의 규정은 국제연합현장과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 하에서 체결된 다른 국제조약과 문서에 의하여 전기의 사람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 ① 본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② 본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한 비준을 필요로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③ 본의정서는 규정을 비준하였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④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의정서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①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본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의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본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는 본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의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1조 ① 본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것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것을 접수하여 본의정서의 당사국에 개정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국으로서 이것을 심의하고 투표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않는가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당사국의 적어도 3분의 1이 본회의에 찬성할 때는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최 하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

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구하여야만 한다.

②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본의정서의 당시국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수락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는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다른 당사국에는 여전히 본의정서의 규정과 이미 수락했던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2조 ①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에 의한 통고로서 어느 때라도 본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에 의한 후 통고수령 3개월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 폐기는 그 효력발생일 이전에 제2조에 따라서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는 본의정서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3조 제8조의 제⑤항에 의하여 행해진 통지와는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제①항에 게기한 모든 국가에 다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8조에 의한 서명, 비준과 가입

⑤ 제9조에 의한 본의정서의 효력발생일과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효력발생일

⑥ 제12조에 의한 폐기

제14조 ① 본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와 스페인어에 의한 본문을 동등하게 정문으로 하여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록된다.

②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의정서의 인증본을 규약 제48조에 게기된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주요 서식례

압수, 수색 영장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발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19××년 압 제××호
사전번호	19××년 형 제××호
사건명	도박
피의자	강 일 성 외 3인
생년월일	19××. 3. 5 (××세)
직업	무직
주거	순천시 ○○동 39번지
압수할 물건	현금 ××만 ×천원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순천시 중앙동 20번지 강남여관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 수색을 한다.

이 영장은 19××. 9. 28. 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차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영장은 광주지방법찰청순천지원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 9. 19

판사 ○ ○ ○ ○

집행일시 19××. 9. 19. 06:20

압수할 물건 현금 ××만 ×천원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년 9월 19일

순천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박 동 성 ⑩

구속 영장 (판사의 직접 발부)

서울형사지방법원

구속영장

영장 번호 19xx 구 xx호
 xx 고단 xx 비밀표시 무효 피고사건
 풍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 박 강 수
 생년월일 19xx. 9. 12(xx세)
 직업 상업
 주거 서울 서대문구 ○○동 92
 구인, 구금 할 장소 서울구치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 영장은 19xx. 4. 10. 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징해에 차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19xx. 3. 31

판사 ○ ○ ○ ①

징해 일시 19xx. 4. 1. 11:20
 징해 장소 서대문구 ○○동 92
 인치 일시 19xx. 4. 1. 11:30
 인치 장소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
 징해 불능 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xx년 4월 1일

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김 상 문 ②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73조, 제75조

〈주석〉 1)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는 인상, 차의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구속 영장 등본 교부 신청서

구속영장등본교부신청서

피의자 ○ ○ ○

위 피의자에 대한 철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등본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도 신체 구속 척법여부 심사 청구
2. 구속일자 및 장소 19xx년 12월 5일 서대구경찰서

19xx년 12월 10일

위 피의자의 번호인

번호사 ○ ○ ○ ③

대구지방법원 귀중

〈주석〉 신체 구속 척법여부 심사 청구에는 이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받아 첨부함으로써 그 범죄 혐의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 바 일부 지방법원에 따라서는 이 등본의 첨부지도를 간소화하여 구속영장 신청서의 범죄 혐의사실 기록 원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속 척부 심사 청구서

구속처부심사청구서

피의자 ○ ○ ○ (남)
19xx년 x월 xx일생

주거 : ○○시 ○○동 xx번지

위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

여 19xx년 10월 21일 귀원에서 반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바, 신체구속 처벌 심사를 청구 하오니 심의하시와 청구위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이 동 선의 식량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할

청 구 이 유

피의자 이 동 선에 대한 피의사실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같은 바

1.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니다.

- (1)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모두 조사가 완료하여 증거 보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폭행 등의 피해자는 처벌을 요망하지 않고 있으며, 또 상해의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 (2) 따라서 모든 항의도 완료하여 그 이상 수사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2.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가 없습니다.

- (1) 피의자는 현재 건축협회에 5,000여만원의 투자를 하여 건축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 자체의 형편으로 보아도 도주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은 이번 폭력배 검거 대상자로서 구속된 것은 아니고, 위 전국 대행업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민사로 경송 중(서울형사지방법원xx가합재xx호 건축대행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는 바, 위 협회 내부 직원 사이에 서로 다투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재 피의자는 8,000여만원의 채권자의 한 사람인 바, 이번의 고소로서 위 대행권을 다시 빼앗고 위 채권을 포기시킬 의도와 채권으로서 폭력범으로 몰아 고소하였다가 그 후 그 고소를 취소하였던 사안으로서 전혀 요즘 말하는 폭력배는 아닌 것입니다.

- (3) 뿐 아니라 피의자는 이러한 사안 관계를 알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스스로 구속에 임했던 자로서 도망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3.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은 어디까지나 일반 형법의 단순 폭력 및 단순 상해사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님은 명백해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 첨 서 류

1. 변호인 선임신고서 1통

19xx년 10월 23일

위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민 덕 환 ④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공 소 장

서 울 지 방 검 찰 청

서지검 형 제xx호

19xx. 12. 26.

수 신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목 공 소 장

다음과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 고 인	본 척 서울 중구 ○○동 4가 187 주 소 서울 중구 ○○동 12의 1 직업성명 서 상 일(徐上一) 금고제작업 생년월일 19xx. 4. 17 주민등록번호
죄 명	<input checked="" type="radio"/> ○ ○ ○ 단속법 위반 <input type="radio"/> ○ 구속 불구속
처 용 법 조	<input checked="" type="radio"/> ○ ○ ○ 만속법 제x조
변 호 인	<input checked="" type="radio"/> ○ ○ ○ ×

유 철 1. 구속영장 1통

2. 변호인 선임 신고서 1통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 ①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주석> 공소장은 피고인 보호의 전지에서 공소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서

기피신청서

피고인 신박도

위 사람에 대한 ××고단 ××호 사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원인이 있으므로 판사 ○○○(또는) ○○○지방법원 법원주사 ○○○을 기피한다.
기피 사유에 대해서는 후일 서면으로서 소명하겠습니다.

다운

1. 판사 ○○○(법원주사 ○○○)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음.

19 ××년 10월 1일

위 피고인 신박도 ①

(또는)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일운 ①)

(검사 ○ ○ ○ ①)

대구지방법원 귀중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5조

<주석> 1)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면 된다.
2) 기피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소정의 어느 사유를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소명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신청 이유는 우선 이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령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상급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조).

5) 이 기피신청은 판사뿐 아니라 법원서기관, 주사와 통역인에게도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5조).

증거보전 청구서 (피고인 작성례)

증거보전 청구서

피고인(피의자) 신 백 주

위 사람에 대한 ××고합 ××호 강도 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나이다.

다음

1. (증명하여야 할 사실)

2. (증거 및 그 보전 방법)

3.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19 ××년 6월 12일

위 피고인(피의자) 신 백 주 ①

또는(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 용 일 ①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184조

<주석> 1)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암수, 수색, 집중, 중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 예를 들면, 암수, 수색에 관하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집중에 관하여는 증거물의 해손, 변조 또는 현장 변경의 염려 등이 있는 경우 일 것이며, 중인신문에 관하여는 중인이 해외로 나간다든가 또는 사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감정에 관하여는 그 대상들의 멀실 혹은 해손, 변경의 염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xx 고단 xx호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피고인 김 갑 동

위 사람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19xx년 12월 24일 오전 11시
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 바 피고인은 병고(또는 변론준비상)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의사의 진단서 1통

19xx년 12월 20일

피고인 ○ ○ ○ ①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 단독 키증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270조

- <주석> 1) 기일의 소환 또는 통지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1조).
2)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를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소명자료(침투)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공판 조서 (인정신문)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조서

1 차

xx고단 xx 특수특행처사 피고사건

판사 ○ ○ ○ 기일 19xx년 9월 20일 14시

법원주사 ○ ○ ○ 장소 제xx호 법정

피고인	신 박 수	출석	공개여부	법정공개
	고 명 태			
검사	○ ○ ○	출석	알려준	
			다음 기일	19xx. 9. 26. 14:00
변호인	이 용 일	출석		

판사의 인정 신문.

피고인 신 박 수에 대하여

성명 신 박 수(申迫洙)
생년월일 19xx. 12. 19(××세)
직업 경찰관
주거 서울 ○○구 ○동 산9번지
본적 경북 안동시 동부동 126번지

피고인 고명태에 대하여

성명 고 명 태(高明來)
생년월일 19xx. 4월 14일생(××세)
직업 상업
주거 서울 ○○구 ○○동 10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요지 진술.
판사

피고인 등에게

피고인 등은 그 권리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과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을 할 수 있고,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 신 박 수

이 사건과 같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가 먼저 물을 먼저 피고인의 전안부에 상처를 입었으므로 이에 격분하여 저지른 것이라 말하고

피고인 고명태

피고인은 피해자 김 명복을 구타한 사실은 없다고 말

검사
피고인 등에게
가족, 재산, 교육정도 및 경력관계는 경찰,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에 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피고인 등은 19××년 4월 6일 22시경 시내 ○○구 ○○동 피스터从中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노상에서 피해자 김명복을 만난 일이 있었던가요.
네, 있었읍니다.
피고인 등은 학세하여 그 때 위 피해자를 구타하여 치사체 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미리 학세하여 구타한 사실은 없읍니다.

검사
피고인 신 박 수에게
피해자는 그때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에다 물을 던졌던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물을 던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물로 맞은 곳에서 약 300미터 가량 추격하여 그 피해자를 붙잡아 오른 주먹으로 안면부를 7회 가량 세게 때리고 흉부를 3회 세게 친 사실이 있었는가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공판조서 결합 청구서

공판조서 열람 청구서

피고인 신 박 수

위 사람에 대한 ×× 고단 ××호 뇌물수수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의 준비상(또는 민사소송 변론 등의 이유로) 공판조서를 열람코자 이에 청구합니다.

19××년 12월 30일

위 피고인 신 박 수 ①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55조

- <주석> 1) 이 청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하는 것이다.
2) 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55조 제3항 참조).

구속 취소 청구서

××고단 ××호

구속취소청구서

피고인 이 채 산

위 사람은 사기 피고사건으로 19××년 10월 30일 귀원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바, 그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의 취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12월 1일

위 피고인 이 채 산 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 ①)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93조

- <주석> 1) 구속의 사유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있는 구속의 실질적 조건을 말한다.
2) 예를 들면, 구속할 때는 주거가 부정이었으나 구속 중에 확실한 신원 인수를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난 경우 등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3) 구속 취소 청구는 구속할 당시는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고 보아서 구속된 경우에, 사후에 이르러 그 사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도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 검사 아닌자가 청구할 때에는 부분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석허가 청구서 (변호인 작성체)

xx 고단 xx호

보석 허가 청 구 서

서울구치소 수감 중

피고인 장 성 백

주소 서울 종로구 ○○동 3의 26

직업 상업

연령 19xx. 4. 9 (xx세)

위 사람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의 보석을 청구하오니 심의하시와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 장 성 백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공소장 기재 사실과 같은 바,

1. 피고인은 도망할 염려가 없음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차와 7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세대주로서 가정환경으로 보아 도망할매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피고인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벌지 신원보증인이 그 신원을 도증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음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이미 기소단체에 있어서 검사의 손에 의하여 보전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멸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인멸할 증거조차도 없습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신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다만 그 소행이 법률상 과연 공무집행 방해가 되느냐의 법률적 판단만이 남아있는 것으로서 구태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한 채로 재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 이상과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한 필요적 보석의 온전이 배풀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보석을 허가함에 상당한 보증금 또는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불여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 첨 서 류

- | | |
|------------|----|
| 1. 신원보증서 | 1통 |
| 2. 주민등록 등본 | 1통 |

19xx년 11월 4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 이 박 ①

(또는) (피고인의 모)(강 성 배) ②

서울형사지방법원 제×단독 귀중

〈참고문〉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

〈주석〉 보석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등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단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드시 부분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죄 판결 (집행유예)

서울형사지방법원

판 결

사 진 xx 고단 xx 병역법 위반
피 고 인 이 남 복(李南福) 직종
(19xx. 10. 9 생)

주 거 서울 ○○구 ○○2동 산2
본 칙 경북 ○○군 ○○면 224번지

검 사 ○ ○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적 사실 피고인은 예비역에 복역하는 자로서,

19XX. 9. 20경 주거지에서 그날 29일 오전 10시까지 육군 ××예비사단에 집결하라는 경북 병무청장의 근무 소집영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소치 아니하다.

증 거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의사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이 만기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적용법조 병역법 제104조 1항

형법 제62조

19XX. 10. 1

판 사 성 ○ ○ ④

피고인의 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신 동 만

위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고합××호 ○○ 피고사건에 대하여 19XX년 12월 20일 귀원 합의 × 부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 판결은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19XX년 12월 26일

피고인 신 동 만 ④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 〈주석〉 1)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한다(형사소송법 제357조).
- 2) 항소기간은 원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이다.
- 3) 항소장은 원 결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려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344조).
- 5) 위의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를 하여 반면에 된다(형사소송법 제344조 2항)

항소 이유서 (피고인 항소)

항 소 이 유 서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 노 ××호 ○○경 월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흥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였었다는 사실에는 끌림이 없으나 유죄의 인정, 행양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유로서 따를 수 있습니다.

19XX년 4월 12일

위 항소인(피고인) ○ ○ ○ ④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 부 귀중

아 래

첫째로, 증×호 ○○○ 명의의 소지허가증이 있는 총에 대하여 그 실에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처제 ○○○에게 빌려주었던 것으로 이른 ○○○가 다시 빌려갔으나 다른 사람에게서 훔아달리는 만을 들었으므로 그 총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모일려고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매매가 결정되면 양도신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작정이었으나 이같은 매매 흥정 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불

법 소지라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총포화약류단속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소지허가가 있는 총을 배내양도한 경우 당사자 사비에 성능이 구조 등의 검증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허가명의인 이외자가 이를 소지하였다 하여 그 법의 소지의 허가 조항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원심의 유죄판결은 위법입니다.

다음으로, 증×호의 증이데, 이것은 피고인의 양조부 ○○○가 생존 시에 산중에서 격반 동침을 앓고 그 이래 수년간 치 다락구석에 내동생이 쳐져 있던 것으로 녹이 봄새 살고 수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에서 말하는 총 속에 끼일 수도 없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현물을 검증하면 대체로 유죄라고 한 것은 원심판사가 ××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원심판사는 ××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원심판사는 ××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로 증×호의 증입데 이것도 총대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지난 몇 달간의 소지허가가 된다고 하므로 즉시 피고인 자신이 배를 불려 동년 ×월 ×일 ○○경찰서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피고인의 2급 명의로 허가원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타인의 것은 동년 ×월 경찰서에 고부되었는데 피고인 2급의 것은 서류가 ○○경찰서에 그대로 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하는 수 없이 허가가 없는 채로 그냥 소지하고 있었던 것임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목적이 유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정의감으로는 짜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대 가능성의 이론으로라도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고 소 장

고 소 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100번지

고소인 이동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300번지

피고소인 신직동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19××년 7월 5일 ○시경.....에서.....○○가
○○○에게.....일로.....
.....한 (상태를 입힌) 것이다.

입증방법

1. 고소인을 조사할 때에 자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2. (의사의 상해진단서) 1통

19××년 10월 10일

위 고소인 이동길 ①

서울지방경찰청 귀중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동법 제237조

- <주석>
-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2) 범인(피고소인)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고소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 3)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고소할 수 있다.
 - 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칙계존속을 고소하지는 못한다.

고발장

고발장

○○시 ○○동 100번지
고발인 이 길동
○○시 ○○동 500번지
피고발인 신 길동

고발 사실

위고발인이 19××년 5월 7일 오후 10시경 ○○시 ○○동 ○번지 앞 노상을 통행할 때 피고발인은 ○○동 ○번지 이 상 수와 달다리를 끌어 그를 칠봉으로 구타하여 두부에 전치 ○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

1. 고발인 및 인근자 ○○○의 목격
2. 의사 이 등 산작성의 진단서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5월 8일

위 고발인 이 길동 ①

○○지방검찰청 귀중
(○○경찰서)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237조

<주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사건 처분 통지서

서울지방검찰청

서지검 제 ××호

19××. 1. 10.

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번지 황길동

제목 고소사건 처분 통지

피의자(피고소인) 박 직 수에 대한 고소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처 分	19××년 형 계 ××× 호
	19××. 12. 30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 ①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258조1항, 검찰사건 사무규정 제43조

- <주석>
- 1) 검사의 고소인 등이의 처분고지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속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이 제도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권리로 보호하는 동시에, 검사의 기소 등 절주의를 전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 3)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의 통지의 내용은 그 사실의 통지만으로써 충분하며 이유를 불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일,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불기소이유의 고지 청구서

불기소 이 유 고 지 청 구 서

피의자 신망수

위 사람에 대한 귀청 ××년 형 ××호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년 12월 30일 자로 귀청에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바 고소인은 그 불기소 결정의 이유를 알고자 하오니 그 이유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1월 10일

위 청구인(고소인) 이 길 동 ①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5조, 제2항

- <주석> 1) 고소인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불기소처분 이유의 고지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 2) 불기소처분의 이유 고지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다.
- 3) 명문으로 서면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에 의한 고지는 할 수 없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주소

피의자(피항고인) 박 길 동

위 피의자에 대한 19××년 형 제 ××호 사기 피의(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은 19××년 7월 7일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바,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 ○○○의한 진술과 암수한 증 제 ××호의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 1통

2. 불기소이유 고지서 1통

19××년 7월 30일

주 소: 위 항고인 김 기 수 ①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참고조문> 검찰청법 제12조

- <주석> 1) 항고이유는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항고기간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최근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역시 그 기간은 30일이다.
- 4) 이 항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 소속의 최근 상급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하는 것이나 항고장은 그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야 하므로 그 결정을 한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 노 ××호

재 항 고 장

항 고 인 ○ ○ ○

위 항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19××년 10월 10일 서울고등검찰원이 한 항고기각 결정은 헌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재항고를 합니다.

재항고의 이유

- 원판시의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다름이 없으나 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며, 바로 헌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위반인 원심결정을 속히 파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년 월 일

위 항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 ○ ①

대법원 귀중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정 신청서

제정신청서

주소: 피의자(피고소인) 신재동

위 사람에 대한 19xx년 형 제××호 독직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인 신청인은 귀청으로부터 19xx년 10월 10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결정)의 통지문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제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
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이유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는 모든 증거가 풍부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불기소처분을 한다.」
는 것인 바, 이를 검토하친데 피의자(피고소인)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인권을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를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장에 기재
되어 있는 바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전치 1개월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
고도 피해자인 이 사건 고소인에게 치료비등 피해현상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한 마디의 사파도 없이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그 공무원의 자리에 머
물러 있으면서 법을 비웃고 있다. 이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는 뚜렷
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막연히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검사의 공소전 행사에 있어 공정을 잃은 처사일 뿐
아니라,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첨부서류

- | | |
|--------------|----|
| 1. 불기소처분 통지서 | 1통 |
| 2. 불기소이유 고지서 | 1통 |
| 3. 고소장 사본 | 1통 |

4. 진정서

1통

19xx년 10월 17일

주소:

위 신청인(고소인) 이길동 ⑩

서울고등법원 귀중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주석> 1) 제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내용하는 고등법원에 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2) 그러나 그 제정신청서는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하므로, 그 신청서는 위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앞으로 제출(사진파에 접수)하여야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61조 참조).

3) 신청서의 기재요건에 관하여는 법률이 특별 명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제정신청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위 신청서를 수탁한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xx조 xx호

정식재판 청구서

피고인 징선달

위 사람에 대한 경찰의 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19xx년 x월 x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선 ××××원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 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19xx년 x월 x일

위 피고인 ○ ○ ○ ⑩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참고조문> 즉결심판에 관한 철차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 〈주석〉 1) 경식재간의 청구는 즉결심판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 청구서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경식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즉시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관찰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찰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복권 신청서

복권신청서

본
적
주
소

신청인 신질동

19XX년 1월 7일생

위 사람은 19XX년 7월 7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자제정지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었던 바 그 후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피해자인 김 ○○에게는 만족하게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계생의 길을 열어주고자 만들어진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복권신청을 하는 것이오니 자격회복의 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자제정지의 형이 선고된 판결문 등본 1통
 19XX년 8월 12일
 위 신청인 신질동 ①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참고조문〉 형법 제82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 〈주석〉 1) 이 신청은 검사도 할 수 있다.
 2) 이 신청은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3)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 보상 청구서

형사보상청구서

본
적
주
소

보상청구인 김길동

19XX년 5월 5일생

위 사람에 대한 귀원×× 고함××호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19XX년 2월 1일 무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형사보상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구금액수 300일에 대하여 1인 ×× 원의 비율에 의한 도합 ××× 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불하라.

청구원인 된 사실

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남대문 시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상점을 갖고 주류 등 도매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그 월수입은 ××·만원 가량이고 7명의 부양가족을 데리고 종류 이상의 누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19XX년 1월 10일경 같은 동업자인 김 모로부터 동업의 조건으로서 상호 금전대차가 있었는 바, 도중에 이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서로 불화가 계속되고 있던 중, 위 김 모는 위 청구인을 사기하였다는 무고한 사실로 검찰에 고소를 하자, 19XX년 1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의 신청에 의한 서울형사지방법원 ○○○ 판사 반부의 영장에 의하여 서울 구치소에 구속된 후, 19XX년 1월 30일 공판에 회부되어 같은 해 4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는 바,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으나, 역시 위 법원에서 19XX년 2월 1일 무죄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같은 달 8일에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무고한 사실로 300일이라는 긴 세월을 부자유한

구속생활로 보냈는 바, 그 정신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청구인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 손해는 막대한 바 있으므로 그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청구금액을 조속히 지급받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첨 부 서 류

- | | |
|--------------|----|
| 1. 무죄판결등본 | 1통 |
| 2. 무죄판결화정증명서 | 1통 |
| 3. 호적초본 | 1통 |

19 × ×년 12월 12일

위 청구인 김 길 동 ①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귀중

<참고조문> 형사보상법 제1조, 제8조

- <주석> 1) 형사보상의 요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 구금을 당하였을 때 청구하는 것이다(형사보상법 제1조).
 2)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조).
 3) 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6조).
 4) 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7조).
 5) 보상청구서에는 그 판결문의 등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8조 1항).
 6) 상속인이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8조 2항 2호).
 7) 보상청구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10조).
 8)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19조).

인권관계단체·교도소·인권변호사 주소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인권위원회(주요도시별)

- 서울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02) 764-0203
- 인천 401-020 인천시 동구 화수동 183
(032) 72-5792
- 춘천 200-130 춘천시 근화동 713-11
(0361) 54-7088
- 태백 235-011 태백시 황지1동 74-77
(0395) 53-0508
- 대전 301-241 대전시 중구 정동 31-1 YMCA 602호
(042) 22-5183
- 광주 500-020 광주시 북구 유동 107-5 YWCA 603호
(062) 524-6507
- 전주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616-8
(0652) 82-9887
- 대구 702-050 대구시 북구 침산동 3-7 기독교방송국 1층
(053) 46-0126
- 포항 790-190 포항시 해도1동 416-14 해로빌딩 203호
(0562) 75-1347
- 부산 601-013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1-1 해양빌딩 403호
(051) 462-4626
- 마산 630-070 마산시 부림동 83-339 한겨레신문 마산지사내
(0551) 45-2275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교구별)

- 서울 100-022 서울 종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6층
(02) 771-76
- 인천 400-090 인천시 중구 답동 3 가톨릭센타
(032) 762-5132
- 수원 440-150 수원시 화서동 100
(0331) 41-5001

- 춘천 200-092 춘천시 흐자2동 400
(0361) 2-2439
- 원주 220-060 원주시 원동 85-1
(0371) 42-3402
- 전주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0652) 5-4205
- 광주 501-023 광주시 동구 금남로 3
(062) 27-6009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 110-071 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
739-3641~3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 110-071 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
739-2584~5
- 정부인권특별위원회
 -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908
738-9041 (교) 2035
- 평화민주당 인권국
 -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782-5085~9
- 통일민주당 인권국
 - 100-360 서울 중구 중림동 28-3
313-1661~75
-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601호
763-2606
- 전국구치소 및 교도소
 - 서울구치소
433-800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0340) 57-3100~7, 소장실 868-8996
 - 성동구치소
134-160 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산5번지
422-9131~4, 422-7524, 소장실 422-9144

- 영등포구치소
 - 152-080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102
613-2661~6, 소장 684-7863, 부소장 684-7874
- 영등포교도소
 - 152-080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0
613-2781~84, 소장실 613-2829
- 안양교도소
 - 430-080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458
(0343) 52-2182
- 수원교도소
 - 440-190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163
(0331) 32-1285
- 청주교도소
 - 360-202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동 140
(0431) 4-8171
- 원주교도소
 - 220-150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0371) 42-9581
- 의정부교도소
 - 480-060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0351) 42-7602
- 인천교도소
 - 402-042 인천시 남구 학의2동 278
(032) 863-4086
- 대전교도소
 - 301-080 충청남도 대전시 중촌동 1번지
(042) 822-9301
- 전주교도소
 - 560-280 전라북도 전주시 평화동 3-99
(0652) 6-3206
- 목포교도소
 - 530-35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96
(0631) 72-4161

• 대구교도소
711-830 경북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053) 632-4504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88-1
(062) 525-6601

• 진주교도소
660-060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서동 1096
(0591) 2-2182

• 안동교도소
762-800 경북 안동군 풍산읍 상리2동 121
(0571) 53-4901

• 경주교도소
788-850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용장리
(0561) 2-4003

• 부산교도소
616-010 부산시 북구 주례동
(051) 324-5501

• 강릉교도소
210-010 강원도 강릉시 흥제동 720
(0391) 2-2095

• 춘천교도소
206-810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거두리 765
(0361) 3-7042

• 순천교도소
541-810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선평리 430
(0661) 52-2137

• 마산교도소
630-020 경상남도 마산시 회성동 345
(0551) 65-9012

• 김천교도소
740-090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2동 245
(0547) 2-2191

• 홍성교도소
350-8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0451) 32-2194

• 공주교도소
315-910 충남 공주군 장기면 금홍리 360
(0416) 52-5811

• 장흥교도소
529-80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전산리
(0665) 2171

• 군산교도소
573-100 군산시 금광동 172
(0654) 62-5159

• 김해교도소
616-141 부산시 북구 대저1동 1028
(0525) 98-0152

• 인권변호사명단

- 이돈명 중구 무교동 7-1 평창빌딩 502 777-5044
- 유현석 중구 무교동 7-1 평창빌딩 502 777-5044
- 김상철 중구 태평동 2가 360-1 광학빌딩 905 755-5335
- 하경철 중구 정동 18-1 정동 APT 501호 755-6988
- 최영도 중구 정동 11-3 풍전빌딩 501호 753-9797
- 이해진 중구 태평동 2가 330 유풍빌딩 304호 752-5846
- 이돈희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753-3909
- 한승현 중구 태평동 2가 360-1 광학빌딩 1001호 752-7744
- 고영구 중구 서소문동 57-9 한영빌딩 901호 779-2288
- 홍성우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755-6868
- 강신옥 중구 무교동 11 광일빌딩 777-2673
- 조준희 중구 태평로 2가 360-1 광학빌딩 752-2232
- 황인철 중구 태평로 2가 360-1 광학빌딩 753-7894
- 이상수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311호 779-2345
- 조영래 중구 서소문동 58-17 명지빌딩 1005 752-4662
- 박성민 중구 태평로 340 대한일보빌딩 906호 73-8037

- 양승찬 중구 서소문동 75 대한빌딩 508호 753-8889
- 서예교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빌딩 1709호 779-3966
- 하재일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622호 777-0678
- 안영도 중구 필동 1가 39-1 국제빌딩 1층 265-2866
- 박찬주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723호 754-1188
- 박인재 중구 태평로 2가 69-5 삼정빌딩 502호 737-4455
- 김동현 중구 서소문로 91 대양빌딩 402호 752-5444
- 박원순 중구 서소문동 57-7 대조빌딩 702호 752-6004
- 김충진 중구 태평로 340 대한일보빌딩 903호 777-4400